

Business Focus

빅테크를 통해 바라본 디지털 금융의 방향

May 2022

삼성KPMG 경제연구원

Contacts

삼성KPMG 경제연구원

최연경

책임연구원

T: +82 2 2112 7769

E: yeonkyungchoi@kr.kpmg.com

곽호경

수석연구원

T: +82 2 2112 7962

E: hokyungkwak@kr.kpmg.com

김규림

이사

T: +82 2 2112 4089

E: gyulimkim@kr.kpmg.com

장지혜

책임연구원

T: +82 2 2112 7438

E: jihyejang@kr.kpmg.com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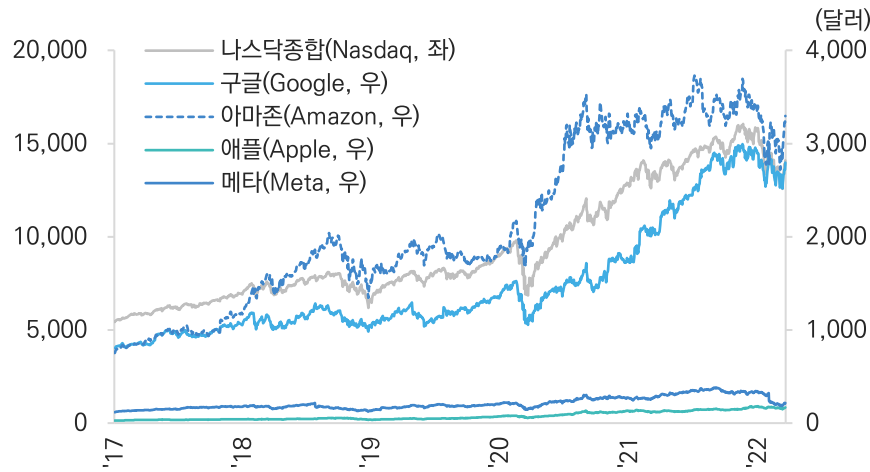
Page

I.	코로나19 팬데믹, 빅테크의 독주	2
II.	글로벌 주요 빅테크의 금융업 관련 행보 및 규제 방향	6
III.	국내 빅테크 규제 방향과 주요 빅테크의 금융 비즈니스	19
IV.	결론 및 시사점	32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빅테크의 성장

2년 이상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상의 비대면화가 이루어지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외 빅테크는 플랫폼과 기술을 기반으로 ‘코로나 특수’로 불릴 정도로 고속 성장을 통해 디지털 메가 트렌드를 선도해나가며 주가 및 비즈니스가 차별화되는 양상

미국 주요 빅테크 주가 추이



기업명	코로나19 이후 주가상승률 (2020.1.1~2022.3.22)
나스닥	11.1%
구글	62.1%
아마존	3.5%
애플	30.5%
메타	-19.4%

Source: Investing.com

Note 1: 2022년 3월 23일 기준, 액면분할에 대한 재산정된 주식 가격임

Note 2: 주가상승률은 2020년 1월 1일 대비 2022년 3월 22일 기준

국내 주요 빅테크 주가 추이



기업명	코로나19 이후 주가상승률 (2020.1.1~2022.3.22)
코스피	24.6%
카카오	249.2%
네이버	86.0%

Source: Investi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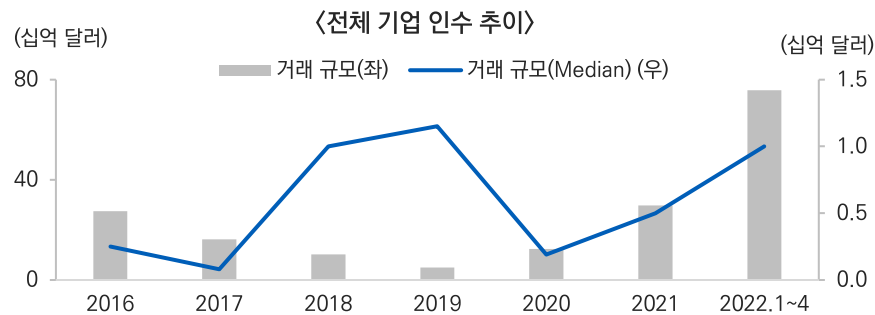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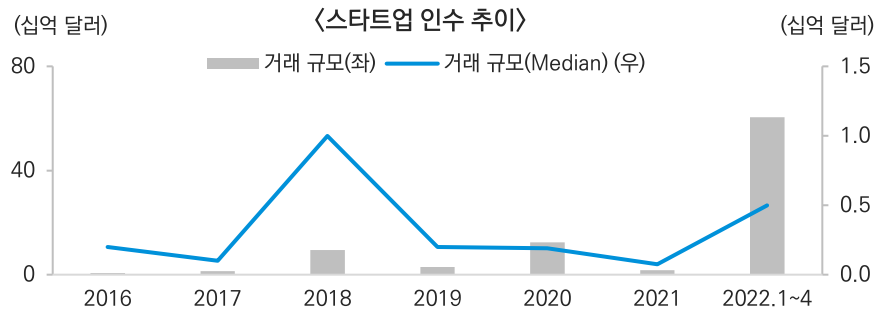
Note 1: 2022년 3월 23일 기준, 액면분할에 대한 재산정된 주식 가격임

Note 2: 주가상승률은 2020년 1월 1일 대비 2022년 3월 22일 기준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빅딜을 이어가는 글로벌 빅테크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 빅테크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M&A를 활발히 진행하며 최근 빅딜 추세.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시장 안착에 성공하면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터 전문가 등 고급 인력 채용에도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음

미국 주요 빅테크 5개사의 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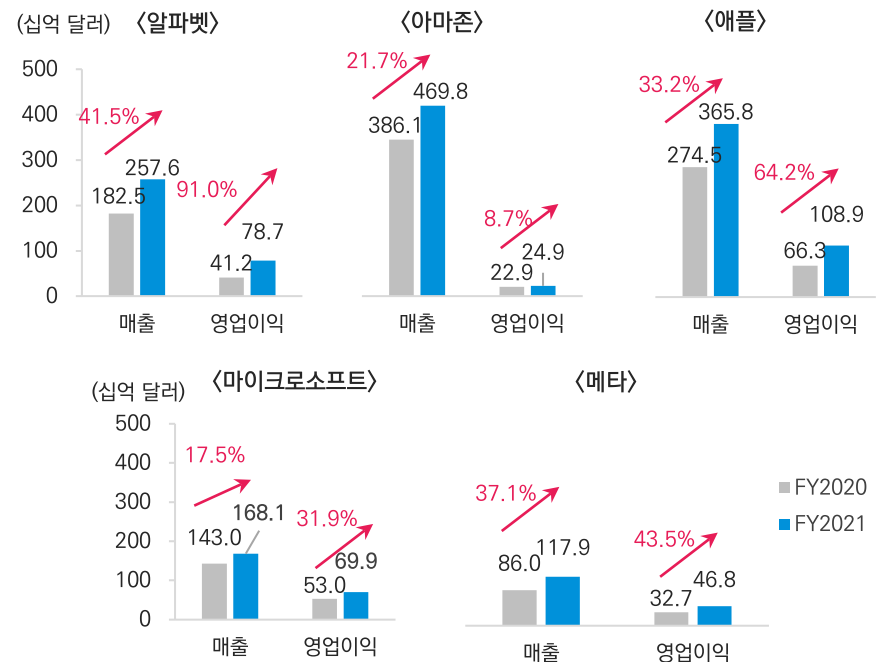


Source: Crunchbase

Note 1: 2022년은 1월~4월 22일까지 누적이며 공시된 데이터만 포함

Note 2: 주요 5개사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임

코로나 팬데믹에도 성장 모멘텀을 이어간 미국 빅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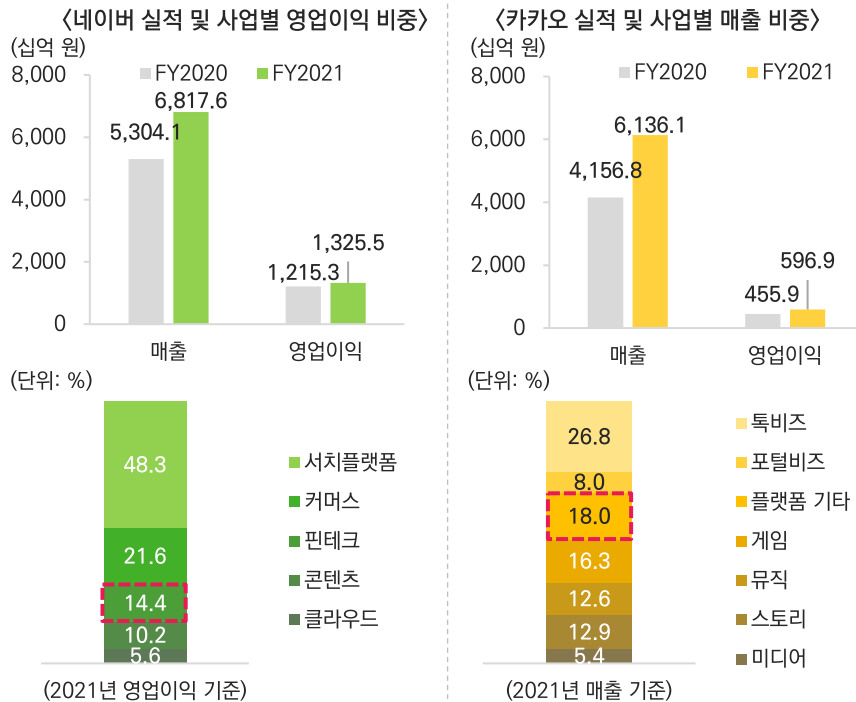


Source: 각사 IR 자료,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국내 빅테크 기업의 약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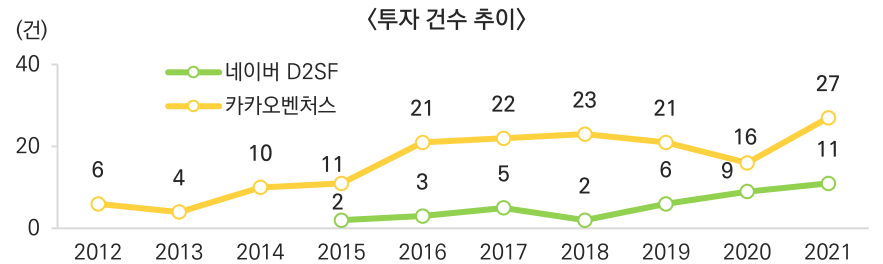
국내에서 빅테크로 지칭되는 네이버, 카카오 또한 코로나19 기간동안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며, 자회사를 통해 인공지능(AI), 블록체인, 핀테크, 콘텐츠 등 다양한 기업에 투자하며 미래 성장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음

네이버, 카카오의 실적 및 비즈니스 모델 현황



Source: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의 자회사를 통한 투자 동향



〈투자 규모 기준 Top 5〉 (단위: 백만 달러)

기업명	투자일	투자단계	투자규모	사업영역
테크타카	21.10.20	Early Stage VC (Series A)	10.5	물류 IT
퓨리오사시	19.11.07	Early Stage VC (Series A)	6.8	인공지능(AI) 반도체
메디블록	20.12.02	Early Stage VC (Series A)	5.5	헬스케어 블록체인
에바	21.08.01	Later Stage VC (Series A)	4.7	전기차 충전 솔루션
두잉랩	21.01.29	Early Stage VC (Series A)	3.6	헬스케어

기업명	투자일	투자단계	투자규모	사업영역
당근마켓	21.08.06	Later Stage VC (Series D)	156.8	중고거래 플랫폼
모조비전	19.03.19	Later Stage VC (Series B)	58.0	AR 솔루션
미네르바	17.04.12	Later Stage VC (Series C)	57.0	에듀테크
루닛	21.07.19	Later Stage VC (Series C)	53.0	헬스케어
리스트림	21.01.01	Early Stage VC (Series A1)	50.0	멀티 스트리밍 솔루션

Source: Pitchbook,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Top 5 투자는 2021년까지의 투자를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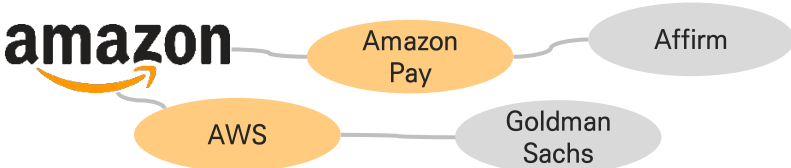
Contents

	Page
I. 코로나19 팬데믹, 빅테크의 독주	2
II. 글로벌 주요 빅테크의 금융업 관련 행보 및 규제 방향	6
• 최근 주요 글로벌 빅테크의 금융업 관련 행보	6
• 글로벌 주요국 빅테크 규제 방향	10
III. 국내 빅테크 규제 방향과 주요 빅테크의 금융 비즈니스	19
IV. 결론 및 시사점	32

미국: 아마존·애플, 페이먼트 사업 중심으로 금융서비스 강화

아마존은 페이먼트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중개하며 디지털 뱅킹 서비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임베디드 금융, 가상자산에도 주목. 애플은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주력 사업인 아이폰을 근간으로 소비자에서 판매자에 이르기까지 지급결제 생태계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아마존 – 임베디드 금융, 금융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 고도화



- 아마존은 전자결제 사업인 아마존 페이(Amazon Pay)를 중심으로 뱅킹 서비스를 자사 고객에게 맞게 조정하여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뱅킹 서비스 적용을 확장하고 있음
- 2021년 8월에는 선결제후지불(BNPL) 핀테크 기업 어펌(Affirm)과 제휴를 맺고 아마존 페이에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임베디드 금융(Embedded Finance)에도 적극적인 모습
- 아마존웹서비스(AWS)는 금융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골드만삭스와 협업하여 2021년 12월 금융기관을 위한 금융 데이터 관리·분석 서비스 ‘파이낸셜 클라우드 포 데이터(Financial Cloud for Data)’를 출시하기도 함
 - 최근 디지털자산 결제 및 NFT 전문가 채용공고를 올리는 등 가상자산에도 관심을 보임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애플 – 개인정보보호 정책 강화 및 아이폰 중심의 생태계 조성



▲ 애플의 새로운 간편결제 방식 ‘탭 투 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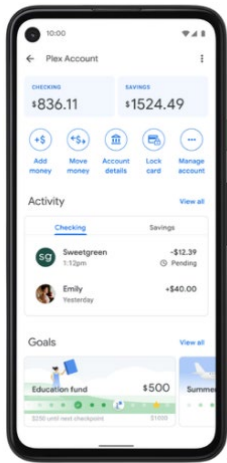
- 새로운 아이폰 운영체제 iOS 14.5 배포, ‘앱 트래킹 투명성(ATT)’ 기능 강화(2021년 4월)
 - ‘사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추적 금지’와 ‘맞춤형 광고 제한’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
- 골드만삭스와 함께 BNPL 서비스인 ‘Apple Pay Later’ 서비스 준비 중(2021년 7월)
 - 애플페이로 결제 시 BNPL 옵션을 통해 무이자- 할부 등 이용 가능
- 추가 결제 단말기 없이 아이폰 자체를 단말기로 활용하는 간편결제 방식 ‘탭 투 페이(Tap-to-Pay)’ 론칭 계획을 발표 (2022년 2월)
 - 애플페이뿐만 아니라 비접촉식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디지털 지갑 등을 아이폰에 접촉해 결제 가능, POS기기 등 판매자, 생산자, 소비자 간 비접촉 결제에서의 애플 파급력 확대 가능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 Photograph Source: Apple

미국: 구글·메타, 기존 금융사와 협업 유지하며 규제 대응

구글은 플렉스 계좌(Plex Account) 서비스 계획을 중단했으며, 메타는 ‘디엠 어소시에이션(Diem Association)’을 매각하는 등 최근 금융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전략을 변경하는 모습. 또한 규제 기조에 따라 구글도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에 광고 매출이 큰 메타의 수익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구글 – 금융사와의 협업 유지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강화



▲ 구글의 플렉스 계좌 예시

- 2021년 10월 자사 결제 애플리케이션 구글페이(Google Pay)에 시티그룹, 몬트리올 은행 등 은행 계좌를 연동하려 한 ‘플렉스 계좌(Plex Account)’ 서비스 계획 중단 발표
 - 구글은 금융회사의 디지털 강화를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힘
 - 구글은 플렉스 프로젝트 중단으로 구글 클라우드를 통한 디지털 बैं킹, 결제 생태계 개발에 더욱 힘쓸 것으로 전망
- 2022년 2월에는 ‘프라이버시 샌드박스(Privacy Sandbox)’라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발표
 - 동 정책은 웹(크롬) 및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활동 이력을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 Photograph Source: Google Blog

메타 – 가상화폐 발행 좌초...메타버스 생태계로 성장 발판 준비



- 2021년 10월 메타버스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견고히 하기 위해 사명을 ‘메타(Meta)’로 변경
- 2021년 10월부터 가상화폐 디지털 지갑인 ‘노비(Novi)’를 출시하여 여 미국, 과테말라에서 시범운영 실시. 메타버스 프레임워크 및 플랫폼 내 NFT 지원 계획, 결제·금융서비스를 노비 브랜드에 통합한다고 발표
 - 노비는 디지털 지갑 브랜드로서 메타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인 ‘디엠(Diem)’을 주도하고 있음. 기존 페이스북 페이(Facebook Pay) 등 관련 서비스가 노비 브랜드로 운영되며 브랜드 일원화
- 2022년 1월 가상화폐 개발 프로젝트 ‘디엠 어소시에이션(Diem Association)’을 실버게이트 캐피탈(Silergate Capital)’에 약 2억 달러에 매각하여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재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한편 애플,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책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한계 직면
 - 개인활동 정보를 바탕으로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비즈니스 모델 한계, 메타버스 기업으로의 전환 비용 증가, 이용자 수 감소 등 향후 사업 불확실성 증대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중국: 알리바바·텐센트, 강한 규제 압박 속 금융사업 재조정

중국 핀테크 기업에 대한 당국의 규제 강화 기조에 따라 중국 정부는 빅테크 기업의 사업 조정 및 제재, 시정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알리바바, 텐센트 등은 기업 구조를 단행하는 한편 해외 투자를 통한 수익 다각화도 모색

알리바바, 텐센트 – 당국 규제에 금융 관련 비즈니스 조정 진행 중



- 2020년 11월 예정된 기업공개(IPO)가 마윈의 중국 비판 발언 파문으로 중단되고 당국의 고강도 규제를 받고 있음
- 2021년 4월 인민은행은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 앤트그룹이 금융지주회사로 재편될 것이라고 발표
- 앤트그룹은 소비자금융 부문 분사·설립(충칭앤트), 국영기업과의 개인신용평가사 조인트벤처 설립(첸탕신용평가) 등 당국 지도 아래 구조 개편을 진행 중

알리페이 신용 상품	화베이 충칭앤트 자본으로 대출업	제베이 외부 조달 자금으로 대출업	비상금 서비스 500위안 무이자 대출 서비스
	제베이 단기 소액대출 서비스	신용다이 신용도 평가, 금리산정 등 외부 사업자가 수행	

▲ 재편 후 알리페이 계정에 표시되는 신용 상품



- 텐센트 또한 중국 반독점 당국이 규정한 초대형 플랫폼 기업으로 분류되어 강화된 규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 중국 경제 금융매체 차이신, 2021년 5월 텐센트 또한 모바일 결제, 대출, 보험 등에 걸쳐 있는 금융사업을 재조정하라고 지시 받았으며, 위챗페이 등 금융 비즈니스를 별도로 관리하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보도
- 중국 내에서의 규제 강화로 해외 기업에 투자를 지속하며 글로벌 디지털금융 분야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투자연도	국가	기업명	분야
2019	아르헨티나	우알라	개인금융 애플리케이션
2020	프랑스	리디아	모바일결제
2021	남아공	타임	챌린저뱅크(인터넷전문은행)
2022	영국	몬조	챌린저뱅크(인터넷전문은행)

▲ 텐센트의 금융 관련 해외 주요 투자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Contents

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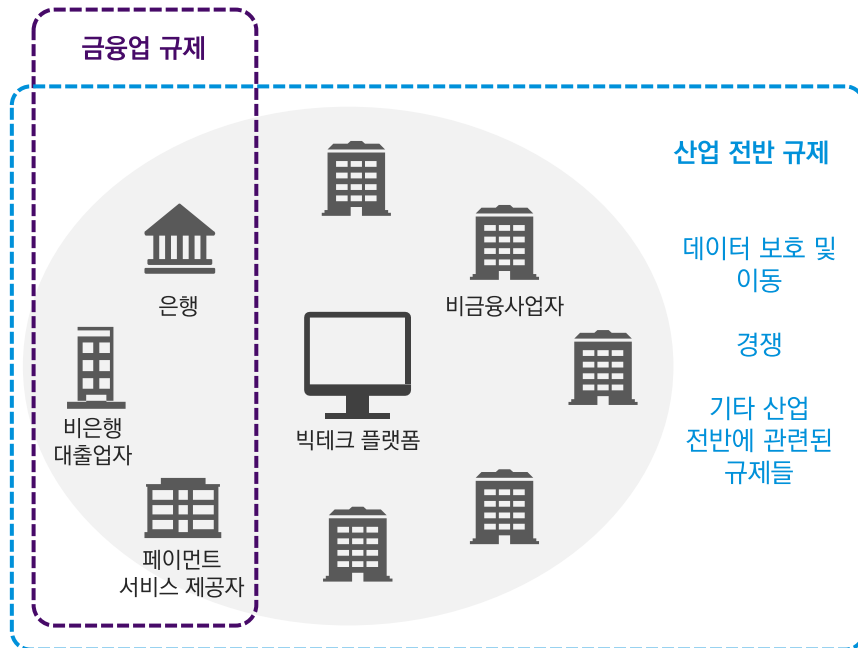
I.	코로나19 팬데믹, 빅테크의 독주	2
II.	글로벌 주요 빅테크의 금융업 관련 행보 및 규제 방향	6
	• 최근 주요 글로벌 빅테크의 금융업 관련 행보	6
	• 글로벌 주요국 빅테크 규제 방향	10
III.	국내 빅테크 규제 방향과 주요 빅테크의 금융 비즈니스	19
IV.	결론 및 시사점	32

II. 글로벌 주요 빅테크의 금융업 관련 행보 및 규제 방향: 글로벌 주요국 빅테크 규제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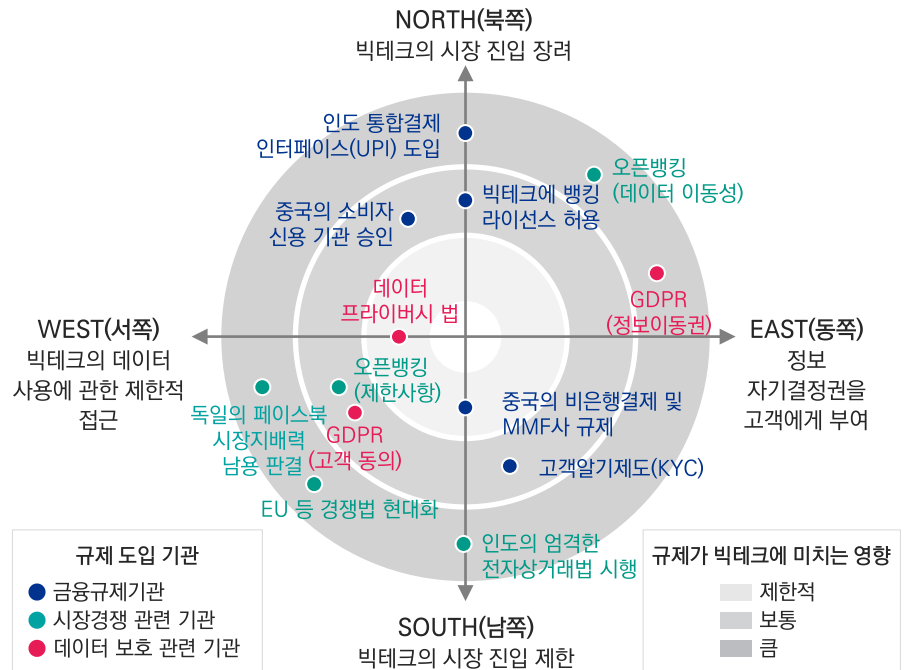
빅테크 규제 움직임을 보이는 글로벌 감독 기관들

글로벌 금융 당국은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이니셔티브를 펼치며 금융 산업의 개방을 지속해왔으나, 최근 들어 독과점, 금융 안정성, 데이터 이동 및 보호 등과 관련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감독 기관들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함

빅테크를 둘러싼 규제 환경



금융산업 내 빅테크 관련 글로벌 규제 나침반



Source: FSI, Big techs in finance: regulatory approaches and policy options(March 2021)

Source: BIS, Annual Economic Report(June 2019)

각국 환경에 맞추어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는 주요국

금융업 관련 빅테크 규제 접근 방식은 크게 기관중심, 행위기반, 혼합 방식 등 세 가지로 볼 수 있으며, 미국, 유럽, 중국 등은 각국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상황, 규제 환경 등에 따라 상이한 규제 접근 방식을 채택·적용

빅테크 금융업 규제 접근 방식

혼합식 접근 (Hybrid approach)

- 기관중심 접근 방식과 행위기반 접근 방식을 혼합한 규제 방식

행위기반 접근 (Activity-based approach)

- 특정 활동/행위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여,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

기관중심 접근 (Entity-based approach)

- 예금, 지급결제, 대출, 증권 등 라이선스를 취득한 개별 기업이나 지주회사 건전성 및 거버넌스 규제

주요국 빅테크 규제 방향



-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이 지급결제, 신용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 중
- 빅테크의 금융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는 마련하지 않으나, 빅테크의 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독점적 지위/경제력 집중을 견제하는 모습
- 또한 기관 중심(FSOC 지정)과 행위기반(데이터 공유 등 특정 활동 제한)을 혼합하는 규제 접근 방식
- '21년 11월 美 대통령 금융시장 워킹그룹(President's Working Group)이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을 은행처럼 규제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빅테크의 잠재적 시스템 리스크를 인식



- 대표적인 빅테크가 부재한 상황에서, 유럽 지역에 진출한 해외 빅테크를 규제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
- 행위기반 규제 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 데이터법 제정 및 제안을 통해 게이트키퍼 플랫폼이 데이터 결합과 데이터 이동 등에 있어 사용자를 보호하고 독점적 지위 남용을 완화/방지하고자 함



- 은행, 결제, 대출, 보험, 투자 등 전반적인 금융 분야에 알리바바, 텐센트 등 빅테크가 진출하여 고객에게 직접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중국 당국은 기관중심 규제 방식을 통해금융자회사 중심으로 빅테크를 규제/감독.
- 최근 주요 빅테크에 금융지주사 설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영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감독하는 방안도 병행하고 있음

Source: IMF, BigTech in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Approaches and Architecture(2022.01.24),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미국: 반독점 보고서를 기반으로 빅테크 규제 수립 진행 중

미국에서는 기존 반(反)독점법을 근거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독점 행위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 미 의회는 2020년 10월 하원에서 작성된 주요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행위에 관한 디지털시장 경쟁 조사 보고서(이하 반독점 보고서)를 토대로 동 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을 2022년까지 법제화할 예정

미 하원 반독점 보고서 중 GAFA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및 주요 권고사항

〈 반독점법 위반 혐의 〉		〈 주요 권고사항 〉		
기업명	반독점 위반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메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인수하여 경쟁을 제거하는 행위("killer acquisition")를 하고, 메타가 운영하는 타 플랫폼(인스타그램, 왓츠앱)과 메타 간의 경쟁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소셜 미디어 시장을 독점한 혐의 	디지털 경제 경쟁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적 분할, 독점적 플랫폼의 인접 사업 영역 진출 금지 플랫폼의 자사 서비스 선호 방지(동일 제품에 대한 동일 조건 제공) 경쟁사와의 서비스 호환 및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요구 플랫폼 인수합병 시 반독점규제 준수 입증 책임을 합병 당사기업들에 부과 자유롭고 다양한 언론 보호를 위해 플랫폼에 대한 언론사의 단체교섭권 인정 우월한 협상력과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계약 시 남용 금지 플랫폼에 의존하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적법한 보호 요구 	
구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검색 및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자신들의 앱을 디폴트(default)로 선 탑재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경쟁자를 배제하고, 시장점유율을 높여 게이트키퍼(gatekeeper) 지위를 유지한 혐의 		반독점 법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독점법률의 목적 재확인 Clayton 법안 제7조 강화: 플랫폼과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는 스타트업 보호, 수직합병 관련법 강화 Sherman 법안 제2조 강화: 지배력 남용 및 약탈적 가격책정 금지 독점금지 판례법에서 문제가 되는 선례 무시 등 추가 강화 요소 도입
아마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온라인 리테일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제3판매자들의 데이터와 정보를 자신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해온 혐의 			반독점 규제 집행력 제고
애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애플스토어 통제를 통해 경쟁업체를 차별하고 자사 제품을 선호하게 만드는 데 활용한 혐의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

Source: 법무법인(유) 지평, 한국은행, 삼정KPMG 경제연구원

미국: 규제 법안 통과로 빅테크 시장 지위에 영향 가능성 (계속)

미 의회에서 빅테크 규제안이 발의되어 상·하원에서 가결 처리 중. 2022년 1월 20일 기술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선택과 혁신 법안’이 미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통과하고, 2월 인앱결제 금지 법안도 통과하면서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미 의회 법사위에 발의된 빅테크 규제안 (수정 버전 기준)

구분	법안	내용
적용 대상		월간 이용자 수 5,000만 명 이상이거나 사업자 수 10만 명 이상, 시가총액 6,000억 달러 초과, 플랫폼에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핵심 거래상대방(“critical trading partner”)인 플랫폼 사업자
주요 법안	플랫폼 독점 종식 법안 (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 이해관계 상충 행위 금지 (어길 시 회사를 쪼개거나 강제 매각)
	온라인 선택과 혁신 법안 (American Choice and Innovation Online Act)	• 경쟁사에 불이익 주는 행위 금지
	플랫폼 경쟁과 기회 법안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 타 기업 인수 시 반독점 소지 없음을 입증
	서비스 스위칭 허용 법안 (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 저장된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쉽게 옮길 수 있도록 함
	M&A 수수료 현실화 법안 (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	• M&A 시 경쟁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인상

온라인 선택과 혁신 법안 주요 내용 및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온라인 선택과 혁신 법안

주요 내용: 지배적인 플랫폼이 유사한 서비스에 의존하는 다른 경쟁사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

예: 아마존이 검색 순위에서 자체 상표 제품을 타사 경쟁 제품보다 더 높은 순위에 올려놓지 못함. 애플과 구글 또한 자체 모바일 앱스토어에 경쟁자보다 자신의 앱 순위를 부당하게 높일 수 없으며, 구글의 일반 검색엔진 결과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



진보단체 ‘Chamber of Progress’, 법안 내용을 조정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온라인 선택과 혁신 온라인 법안 통과 시 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것...빅테크는 앞으로 상품을 더 비싸고, 덜 편리하고, 덜 안전하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Source: 언론 보도자료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Source: 언론 보도자료 종합

유럽: 소비자 정보 보호, 빅테크 독점 방지 등을 위한 노력

유럽은 PSD2(Revised Payment Service Directive),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의 제정 등을 통해 소비자 정보 보호에 방점을 두는 기초. 최근 빅테크 등 시장 참여에 따른 공정 시장(Level Playing Field) 조성을 위해 2020년 12월 ‘디지털 서비스법 패키지’ 등을 발표

최근 EU에서 제정된 빅테크 관련 주요 규제

규제/법안명	제정	시행	내용
PSD2	2015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이 금융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확보 • 고객 동의 하에 API를 통해 금융기관이 축적한 데이터를 제3자가 조회할 수 있고 고객 대신 제3자가 금융기관에 지급 지시할 수 있음
GDPR	2016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개인의 정보에 대한 통제 권리 확대를 목적으로 제정 • 정보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 • 개인정보보호 규제 위반 시 과징금* 부과 <p>*심각한(일반적) 위반일 경우 최대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 4%(2%) 또는 2천만(1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p>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EU 이사회 규칙	2019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 사업자와 상업적 이용자(중소기업) 간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 •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적시, 플랫폼 서비스 제한/중지/해지 시 사전통지 의무, 분쟁해결절차 마련 등

Source: 언론 보도자료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플랫폼 사업자 규제 강화를 위한 DMA·DSA

디지털 시장법 (Digital Markets Act, DMA)

- 적용대상: 글로벌 시장자산 가치 650억 유로 이상 또는 유럽경제지역(EEA) 내 매출 65억 유로 이상인 플랫폼 중 3개 이상 회원국에서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며, 1만 개의 비즈니스 사용자와 4,500만 명의 개인사용자를 최소 3년 이상 보유한 플랫폼
- 규제목적: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행동을 규제함
- 주요내용: 일명 게이트키퍼 플랫폼(Gatekeeping Platform)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디지털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경우 제재를 가하여 벌금부과 및 플랫폼 폐쇄까지 가능하게 함

디지털 서비스법 (Digital Services Act, DSA)

- 적용대상: EU에서 4,500만 명 이상의 월간 활성 이용자를 보유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 규제목적: 온라인상 불법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유해한 콘텐츠 처리, 제3자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공급자의 책임, 온라인 이용자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일반원칙 등을 정함
- 주요내용: 위반 시 해당 플랫폼 연매출의 최대 6% 과징금 부과 가능

Source: EUR-Lex, 한국무역협회, 한국소비자법학회,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DMA는 2021.12.15일, DSA는 2022.1.23일 유럽 의회 통과

유럽: 해외 빅테크 영향력 경계하며 적극적인 규제 움직임 (계속)

유럽에서는 GAFA를 대체할 빅테크 기업이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 빅테크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자 이를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양상. EU는 경쟁법 등을 바탕으로 빅테크에 대한 조사와 제재 등을 강화하며 2022년 2월 데이터 법(Data Act)을 통해 데이터 개방과 개인정보보호 규제 강화 가속화

EU의 빅테크 제재 사례

제재 시기	기업	위반 혐의	벌금/과징금
'09.5	인텔	반독점법 위반	10억 6,000만 유로
'16.8	애플	조세회피	130억 유로
'17.5	메타	M&A 과정 허위정보 제공	1억 1,000만 유로
'17.6	구글	반독점법 위반	24억 2,000만 유로
'17.10	아마존	부당특혜	2억 5,000만 유로 (과세)
'18.1	퀄컴	반독점법 위반	9억 9,700만 유로
'18.7	구글	반독점법 위반	43억 4,000만 유로
'19.3	구글	시장지배력 남용	14억 9,000만 유로
'22.3	메타	GDPR 위반	1,700만 유로

Source: 언론 보도자료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유럽집행위원회(EC)의 데이터 법 초안 제안과 미 하원의 반발



- 데이터 법(Data Act)은 유럽 소비자들이 스마트 기기 등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더욱 간편하게 공유하고 보호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
- 빅테크는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소비자는 물론 다른 기업들과도 교환해야 함. 또한 EU 외 다른 국가 정부가 데이터에 불법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함
- 데이터 법은 디지털 환경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경쟁적인 데이터 시장을 활성화하며 데이터 중심 혁신 기회를 열어주고, 모두가 데이터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 데이터 법 시행 시 2028년까지 역내 국내총생산(GDP)이 2,700억 유로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미국 초당파 하원의원 30명, EU가 관련 법안 문구를 조정하도록 압력을 가해달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
- EU의 접근법은 의도적으로 차별적·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미국 빅테크만을 소위 게이트키퍼로 간주한다고 주장

Source: 언론 보도자료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중국: 2020년부터 대형 온라인 플랫폼 규제 본격화

중국 또한 빅테크 대형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 2018년 지급결제 청산 전담기구 왕롰(NUC) 도입에 이어 2020년 독점금지법 개정, 온라인거래 감독관리 등을 통해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및 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2022년 1월에는 9개 기관에서 빅테크에 적용되는 종합 지침을 발표

중국의 핀테크 관련 주요 규제

발표시기	정책	감독 기관	주요 내용
2019.9	〈독점금지협정 잠정규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에 관한 잠정규정〉, 〈행정 권력의 남용 억제 및 경쟁 제한 임시 규정〉 등 3개 임시규정 시행	국가시장감독총국	• 중국의 반독점법 집행 기관의 통합 실현 후, 독점 금지 법률 시스템의 통일, 정제 및 최적화
2020.1	〈독점금지법〉 개정안 (공개 의견수렴 초안)	국가시장감독총국	• 인터넷 산업도 독점행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 •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경쟁 규칙 제정 및 시행
2020.12	독점행위로 인한 민사 분쟁 사건의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법률 적용	최고인민법원	• 중국의 독점 금지 민사 소송의 법률적 프레임워크 명시
2021.2	플랫폼 경제분야 독점 금지 지침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 독점적 지위에 기반을 둔 플랫폼 업계의 부당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플랫폼 경제의 특징을 반영한 세부 규정 명시 • 플랫폼 사업자 시장점유율 기준, 빅테크기업의 양자택일 가용 등 경쟁 제한행위 금지, 가변이익실체(VIE) 구조를 가진 기업결합 방지 등
2021.3	온라인거래 감독관리 방법	국가시장감독총국	• 플랫폼 경제의 독점, 불공정 경쟁, 개인정보보호, 소비자권리 보호 등 SNS,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또한 전자상거래 운영자로서 독점 금지 감독의 대상이 됨
2021.8	온라인 불공정 경쟁행위 금지 규정 (의견 수렴 초안)	국가시장감독총국	• 기존 부정경쟁방지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포괄해 네트워크 불공정 환경 조성, 허위 선전 등에 관한 조항 명시. 특히 광고차단, 양자택일, 빅데이터에 관한 규정 명확화
2022.1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	인터넷정보판공실, 공안부, 공업정보화부, 국가시장감독총국	•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빅데이터로 수집된 소비 습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과금 구조를 개선하고, 맞춤형 콘텐츠로 인한 콘텐츠 중독 현상을 타파하는 목적
2022.1	플랫폼 경제 규범의 건전·지속 발전에 관한 의견(지침)	발전개혁위원회, 국가시장감독총국 등 9개 부처	• 시장독점적 지위 남용 금지, 핀테크 인수 등 금융 영향력 확대 제한, 합법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데이터 보안 강화 등을 규제 사항으로 열거 •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운영체제, 반도체 칩 분야는 진출 권장

Source: KOTRA, 언론 보도자료 종합하여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중국: 시장 영향력 커진 빅테크... 관리·감독 강화 추세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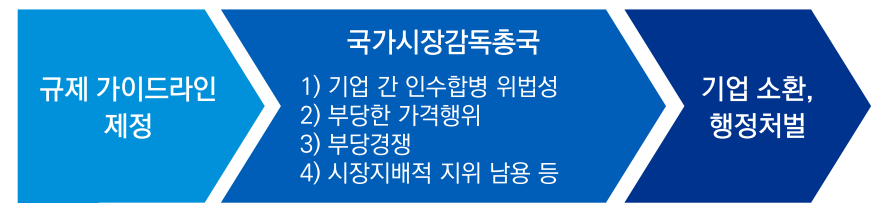
특히 2021년 8월 중앙재경회의에서 국정 어젠다로 제시된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의 일환으로 빅테크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기업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 11월 시장관리감독총국 내 국가반독점국이 정식 개설.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의 대표적인 플랫폼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벌금이 부과되고 규제 리스크가 확대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균형적, 조화로운, 포용적 발전	• 지역발전 균형 추구, 독점산업 개혁 가속화, 금융과 부동산의 실물경제와의 조화로운 발전 추진, 중소기업 발전 지원
중산층 확대	• 학력수준 제고, 기술인재 양성, 중소기업 경영환경과 세금부담 개선, 호적제도 개혁
공공서비스 보급 확대	• 저소득층의 교육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수준 향상, 사회복지시스템 개선(연금, 의료, 주택 등), 근로자와 주민·도시와 농촌의 소득과 복지 격차 감소, 최저 생활 보장 수준 제고
고소득층 규범과 조정 강화	• 개인소득세 제도 개선, 부동산세의 입법과 개혁 추진, 소비세 징수범위 확대 연구, 자선사업 규범화 관리와 세금혜택 보완, 독점산업과 국유기업의 소득분배관리 강화
정신생활 공동부유 추진	•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강화, 공공문화사업과 서비스 발전 문화수요 충족
농민과 농촌의 공동부유 추진	• 농업 산업화, 농민 소득 증대

Source: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21-25호,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과 기업규제 리스크(2021.12.07~12.20)

중국의 핀테크 관련 제재 절차와 주요 반독점 관련 벌금 부과



시기	기업	벌금/과징금
2020.12	알리바바	182억 2,800만 위안
2021.04	텐센트, 바이두, 디디추싱 등	적발 사례 당 50만 위안
2021.07	텐센트	50만 위안
2021.10	메이탄	34억 4,200만 위안
2021.11	알리바바(12건), 텐센트(12건), 바이두(3건) 등	적발 사례 당 50만 위안
2022.01	텐센트(9건), 알리바바(2건), 징둥(1건), 비리비리(1건)	적발 사례 당 50만 위안

Source: KOTRA, 언론 보도자료 종합하여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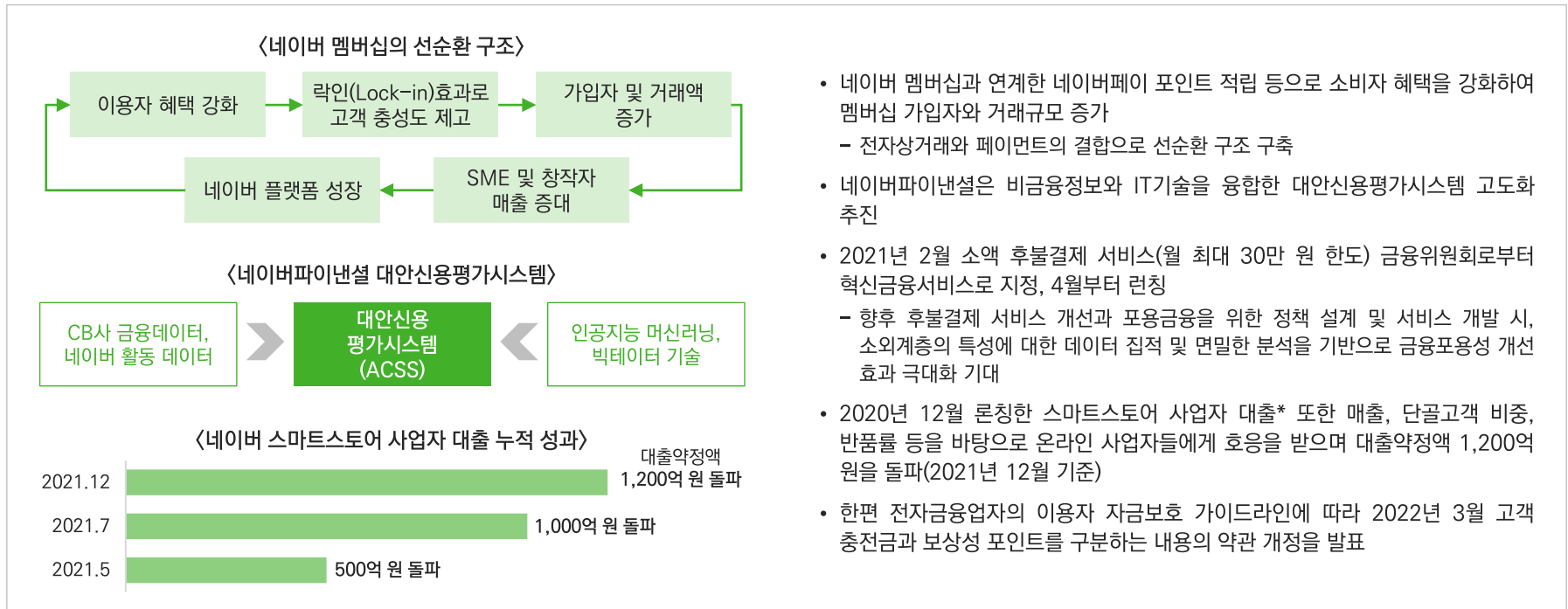
Contents

	Page
I. 코로나19 팬데믹, 빅테크의 독주	2
II. 글로벌 주요 빅테크의 금융업 관련 행보 및 규제 방향	6
III. 국내 빅테크의 금융 비즈니스 및 규제 방향	19
• 국내 주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현황	19
• 국내 금융사와 빅테크에 대한 규제 동향	23
IV. 결론 및 시사점	32

네이버: 네이버쇼핑과 네이버페이 기반 금융 서비스 확대

네이버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과 연계된 네이버페이를 기반으로 소비자-판매자-플랫폼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성장 모색 중. 특히 대안신용평가시스템(Al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 ACSS)을 활용한 서비스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라인(LINE)을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음

네이버 - 전자상거래와 페이먼트를 결합해 원스톱 플랫폼 구축하며 다양한 서비스 선보이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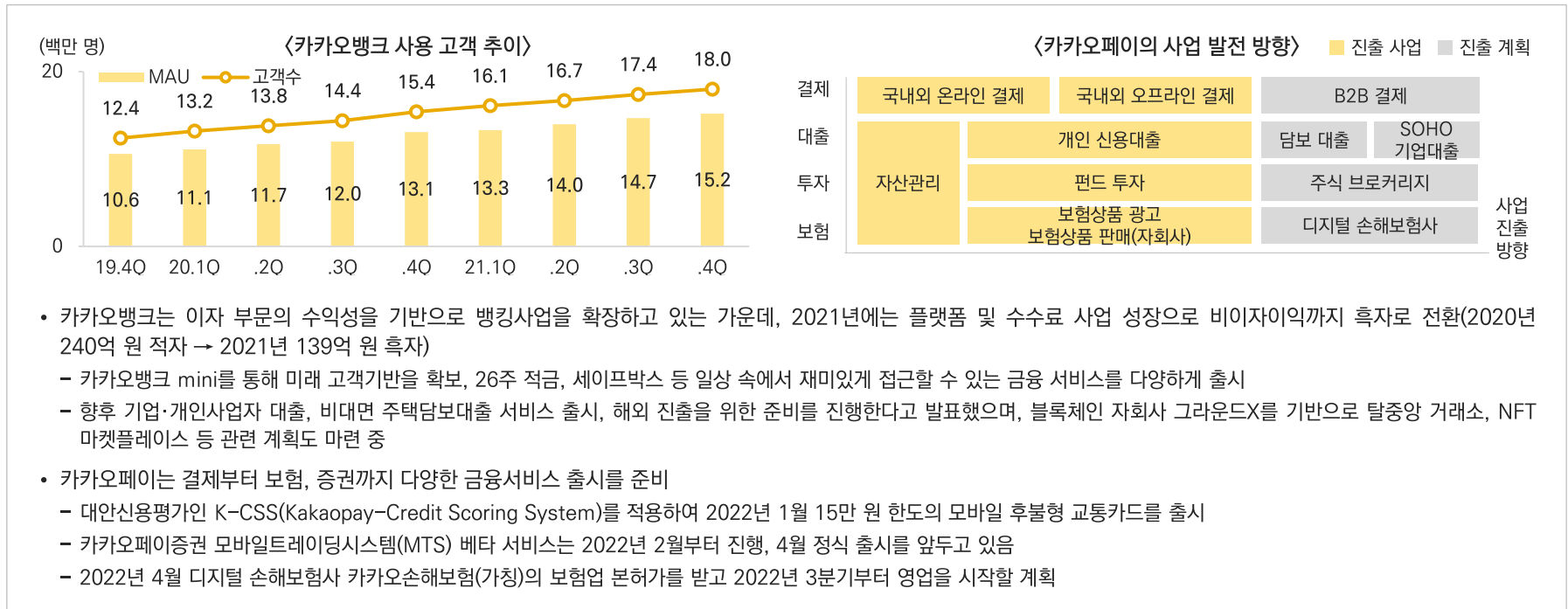


Source: 네이버, 금융결제원, 언론 보도자료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은 2022년 3월 현재 미래에셋캐피탈, 우리은행과 제휴하여 제공

카카오: 플랫폼 강점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출시

2021년 카카오뱅크(8월), 카카오페이(11월) 기업공개(IPO)에 성공한 카카오는 금융업을 직접 영위하는 전략을 유지. 간편송금 및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작으로 이용자를 확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 기반을 넓히고 있음. 최근 디지털 손해보험사,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준비·출시하면서 제2의 도약을 준비 중

카카오 -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금융사 라이선스 확보를 통해 금융 고객 침투



Source: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증권신고서, 금융결제원, 언론 보도자료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III. 국내 빅테크의 금융 비즈니스 및 규제 방향: 국내 주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현황

토스: 하나의 앱에서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확장

간편송금 스타트업에서 시작한 토스는 데카콘(Decacorn)*을 넘보는 핀테크로 성장. 2021년 10월 국내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 출범 이후 ‘간편결제-보험-증권-은행’으로 이루어지는 종합금융플랫폼을 지향하는 가운데 모바일 환경에 특화된 서비스로 차별화하며 입지 강화 모색 중

토스 - 원앱(One-App) 전략으로 슈퍼 금융플랫폼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



- 2013년 설립 이후 간편송금 서비스 출시로 혁신성과 성장성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거액의 투자를 지속해서 유치
 - 금융사의 상품·서비스를 단순 연계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금융업의 직접적인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으며, 성장 가능성도 부상하고 있음

〈토스의 투자유치 실적〉

투자시기	주요 투자자	투자규모	기업가치
2014.6	(미상)	10억 원대	-
2015.7	KTB네트워크, 알토스벤처스, IBK기업은행	50억 원	-
2016.4	기존 투자자	265억 원	-
2017.3	페이팔	550억 원	-
2018.6	싱가포르투자청, 세콰이어차이나	440억 원	-
2018.12	클라이너퍼킨스, 리빗캐피탈	900억 원	1조 3,000억 원
2019.8	에스펙스	770억 원	2조 7,000억 원
2020.8	기존 투자자	2,060억 원	3조 1,000억 원
2021.6	KDB산업은행, 알키온캐피탈	4,600억 원	8조 2,000억 원

- 토스뱅크는 모바일 금융거래가 익숙한 20~40대를 주축으로 이용고객 수가 지속 증가하며 성장세를 보임
 -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하루 단위의 이자지급 시스템 도입 등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여 주목 받고 있음
- 2021년 2월부터 지점 없는 모바일 전문 증권사를 표방하며 토스증권을 운영하기 시작
 - 같은 해 3월부터 MTS를 선보이며 1년여 만에 이용자가 42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22년 4월부터 해외 소수점 투자 서비스 제공 예정
- 후불결제 서비스(월 30만 원 한도) 출시도 준비하고 있으며 2022년 2분기 내 ‘토스신용데이터준비법인’ 설립 예비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

〈토스뱅크 이용고객 연령 분포〉

(단위: %)



〈토스뱅크 사용 고객 추이〉

(단위: 만 명)



Source: 토스뱅크, Cretop, 언론 보도자료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데카콘은 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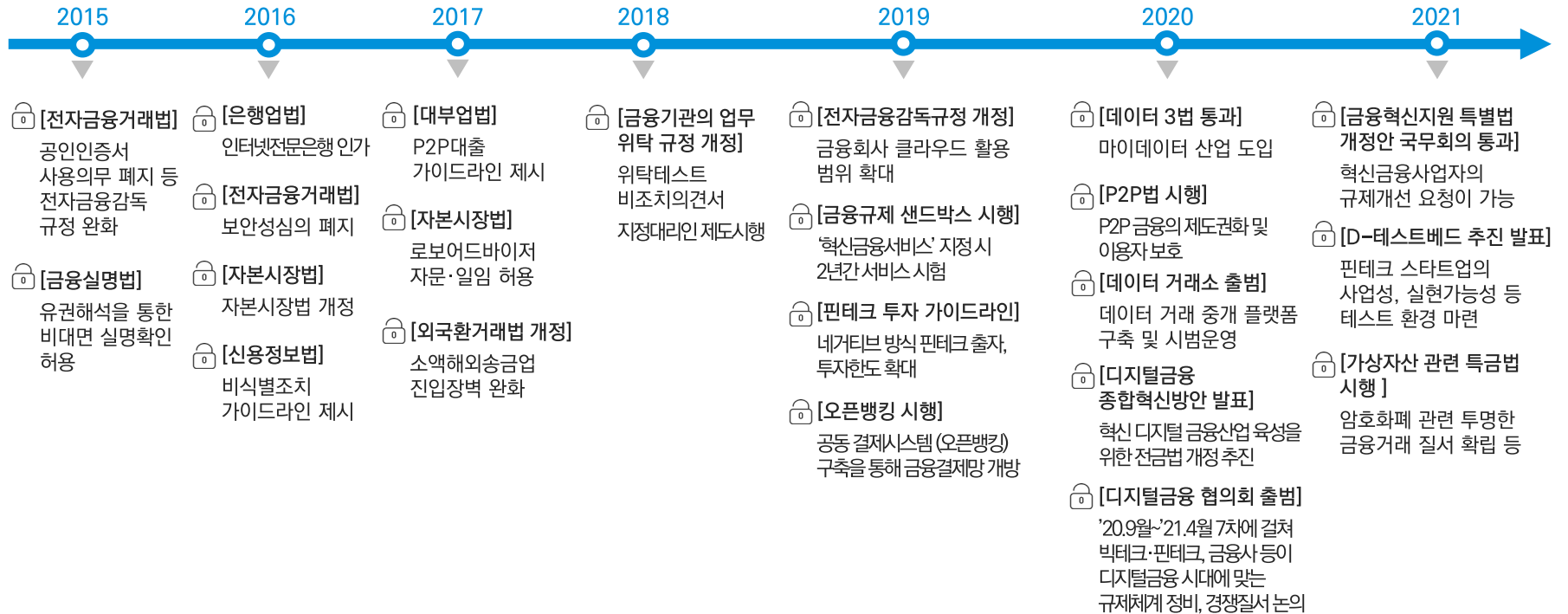
Contents

	Page
I. 코로나19 팬데믹, 빅테크의 독주	2
II. 글로벌 주요 빅테크의 금융업 관련 행보 및 규제 방향	6
III. 국내 빅테크 규제 방향과 주요 빅테크의 금융 비즈니스	19
• 국내 주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현황	19
• 국내 금융사와 빅테크에 대한 규제 동향	23
IV. 결론 및 시사점	32

① 빅테크의 성장: 금융산업 개방 기조 속 빅테크·핀테크 성장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소비자의 편의 제고와 혁신을 위해 금융산업 내 IT 융합 및 금융산업 개방 기조를 유지. 이를 통해 국내 핀테크·빅테크의 성장과 디지털 금융 인프라 토대를 마련했으며, 특히 결제망과 데이터 개방 등을 통해 국내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가속화

국내 정책당국의 금융산업 관련 규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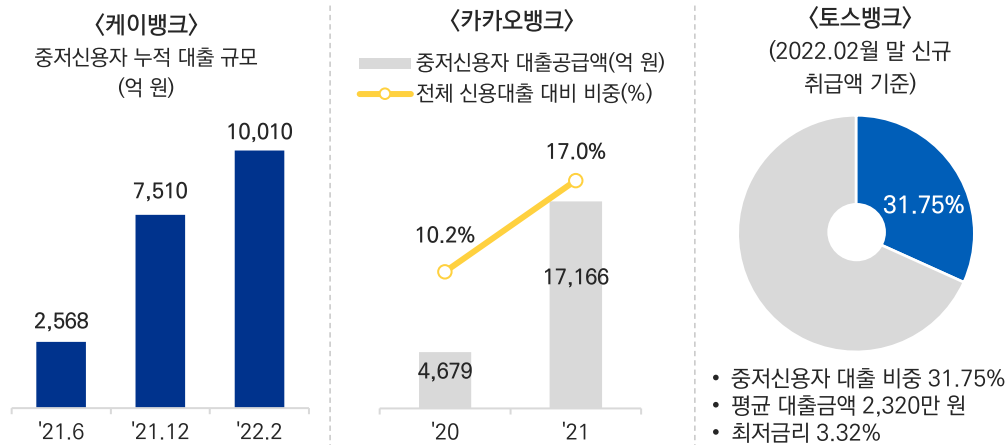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① 빅테크의 성장: 빅테크로 촉발된 금융산업 내 혁신과 편의성 제고

국내 금융산업 내 혁신 촉진과 개방 기조 하에 국내 금융산업에서 빅테크와 핀테크의 영향으로 사용자 편의성과 금융 포용성을 높이는 효과 창출. 기존 주요 금융권은 빅테크 등의 영향력 확대로 경쟁 압력이 높아지며 빅테크와 금융상품 공동 개발, 디지털 혁신 추진 등 전략적 협업을 모색하는 동시에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노력 중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Source: 각 사 보도자료
Note: 중저신용자는 신용평점 KCB 820점 이하 대상임. 카카오뱅크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전체 신용대출 대비 비중임

국내 빅테크와 금융사 간 협업 및 경쟁 현황

기업	주요 중단/변경 서비스
KB국민은행	• 2022.1월 KB금융-네이버 간 AI 관련 업무 협약(2019.4월 체결) 중단 발표
신한은행	• 네이버부동산과 연계한 전세대출 상품 판매 준비 • NHN페이코와 BNPL 서비스 등 신 서비스 발굴 및 금융플랫폼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하나은행	• 네이버 일본 관계사 라인과 인도네시아 디지털 은행 '라인뱅크' 공식 출범 (2021.6월)
우리은행	•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연계 대출 '우리은행 스마트 스토어 대출' 출시
IBK기업은행	• 네이버와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등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 상품 등 개발
전북은행	•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데이터/AI 활용 업무 협약 • 네이버파이낸셜과 금융서비스 고도화 제휴
광주은행	• 1금융 최초로 토스뱅크와 모바일 대출 비교 서비스 시행 등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긍정적 파급 효과

- ① 금융 혁신 유도 →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
- ② 금융 산업 내 경쟁 강화 → 금융소비자 후생 증대
- ③ 빅테크의 다양하고 풍부한 데이터와 금융데이터 결합 →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 ④ 금융서비스 및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행 → 소비자의 금융접근성과 편의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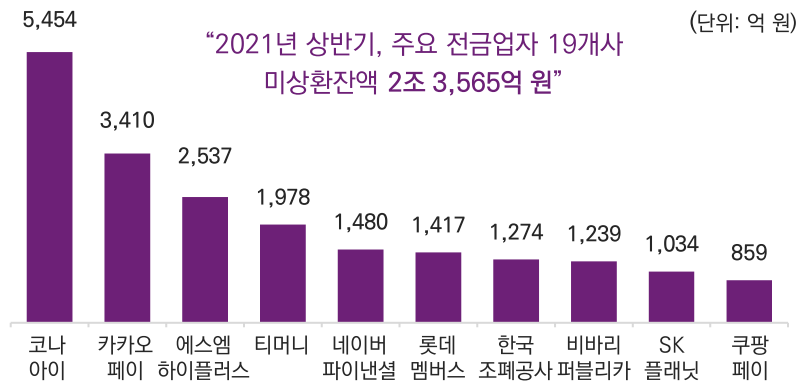
Source: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은 여전히 특별한가?: 디지털금융의 확산과 은행의 대응(2020.10.15), 예금보험공사 금융리스크리뷰(2020.08.31),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2021.10.16),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III. 국내 빅테크의 금융 비즈니스 및 규제 방향: 국내 금융사와 빅테크에 대한 규제 동향

① 빅테크의 성장: 빅테크 금융업 진출로 인한 리스크 우려 점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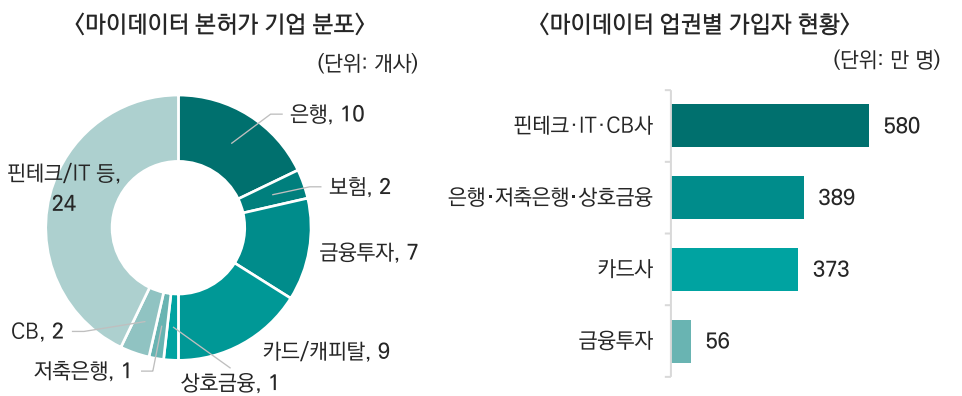
빅테크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빅테크 금융상품 관련 리스크 점증 및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빅테크의 데이터 독과점 등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안정성 저해, 데이터 독점, 금융소비자 피해 가능성 및 관련 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상환잔액 규모(2021.6월 말 기준)



Source: 파이낸셜뉴스(2021.10.06., 급증하는 선불충전금) 및 윤창현 의원실

빅테크 및 금융권 마이데이터 허가 및 가입자 현황



Sourc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2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 2022.4.13, 배진교 의원실('22.1.27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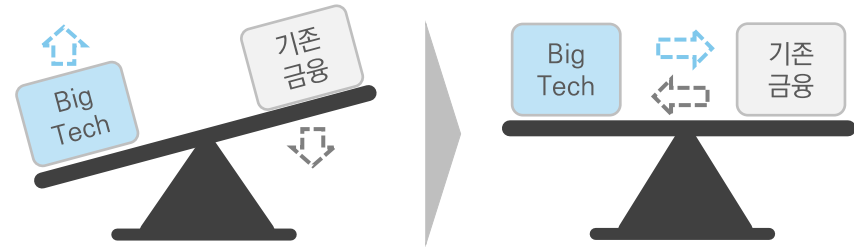
- ① 독과점 가능성 - 빅테크의 네트워크 외부성이 크게 작용, 특히 데이터 집중에 따른 데이터 독과점 우려 증가
- ② 금융안정성 저해 가능성
 - 빅테크와 은행 간 과도한 경쟁에 의한 위험 추구
 - 빅테크의 리스크가 제후 금융사로 전이빅테크의 자금조달과 운용에서 만기불일치에 따른 유동성위험
 - 빅테크의 실패, 운영위험 등이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전이 가능성 등
- ③ 금융소비자보호 저해 가능성- 금융회사가 아닌 빅테크 출시 금융상품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규제 등
- ④ 금융업과 비금융업 간 리스크 차단의 불확실성

Source: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은 여전히 특별한가?: 디지털금융의 확산과 은행의 대응(2020.10.15), 예금보험공사 금융리스크리뷰(2020.08.31),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2021.10.16),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② 규제 정비 필요성 대두: 금융소비자 권익과 시장 질서에 관한 고민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본격화대형화에 따라 공정 경쟁 및 건전한 시장 질서 유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데 기인하여 빅테크와 금융사간 상생이 화두로 부상. 이에 금융시장의 과도한 집중/의존 방지, 시장참여자 간 공정한 경쟁,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규제 정비가 진행 중이며 금융당국이 이와 관련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음

금융산업 내 공정 경쟁 필요성 제기와 규제 정비 논의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본격화 및 대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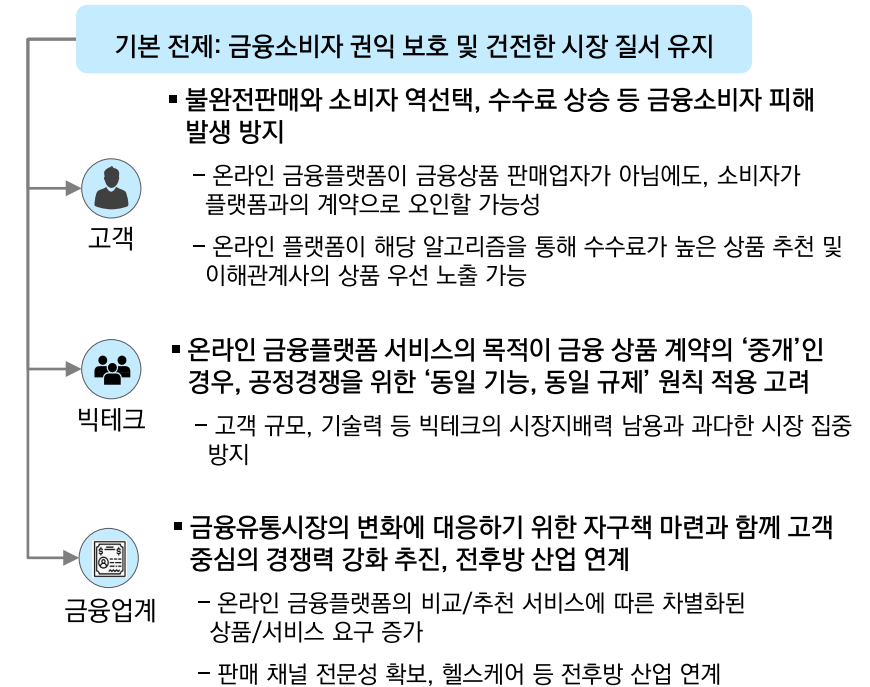
- 대고객 판매 채널 독과점 발생 우려
- 빅테크의 장기 금융상품 리스크 관리 미흡
-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우려

공정경쟁 및 소비자 보호 위한 안전장치 마련

- 플랫폼 기업이 지켜야할 의무 명문화
-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범위 명확화
- 금융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영위 허용

Source: 삼성KPMG Digital 본부

금융당국의 공정 경쟁에 대한 고민



Source: 삼성KPMG Digital 본부

② 규제 정비 필요성 대두: 빅테크 영업행위,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검토

금융상품 판매 채널에서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 확대와 금융소비자보호법(2020년 3월 25일 공포, 2021년 9월 25일 시행) 시행이 맞물리면서 감독당국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금융 플랫폼 서비스의 금융상품 중개 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표명

빅테크·핀테크 영업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

<p>유형 ① “투자” 메뉴에서 상품 정보 제공 후 플랫폼 내에서 모든 계약 절차 진행 & 플랫폼은 판매실적 연동 수수료 수취 → “중개”</p> <p>: 전반적으로 플랫폼이 판매에 적극 관여 : 소비자는 금융상품 계약주체를 플랫폼으로 인지</p>	<p>유형 ② “A플랫폼 추천하는 인기보험” 등 금융상품 비교/추천 → “중개”</p> <p>: 금융상품 추천은 판매과정 중 하나인 “잠재고객 발굴 및 가입 유도”에 해당</p>
<p>“중개”인 경우 금융소비자 판매업자 등록 및 금소법 적용</p>	
<p>유형 ③ 가입자가 보험상담 의뢰 시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를 연결 → 플랫폼이 판매업자인지에 따라 자문 또는 중개에 해당</p> <p>- (판매업자가 아닌 경우) 자문서비스 - (판매업자인 경우) 중개</p>	<p>유형 ④ 가입자가 보험상품 정보 제공 시, 특정 보험회사에서 그 정보에 대한 분석결과 및 이를 토대로 보완 필요한 보험 상품 추천 → “중개”</p> <p>: 분석을 넘어 관련 상품 추천 및 가입지원 (보험설계 등)도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p>

Source: 예금보험공사 금융리스크리뷰(2020.08.31),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2021.10.16),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금소법 관련 서비스 중단 또는 변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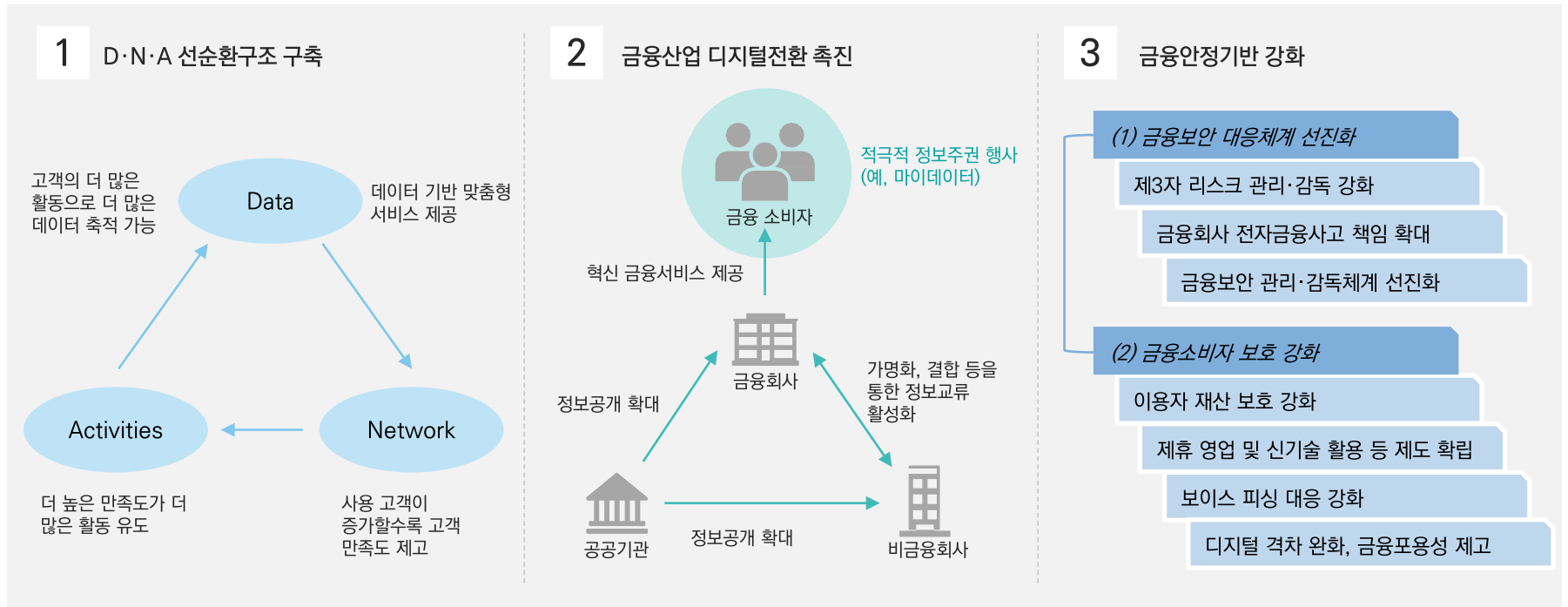
기업	주요 중단/변경 서비스
카카오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투자연계(P2P) 금융상품 판매 •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 중단 • 펀드 판매 서비스(카카오페이증권이 판매·중개 주체임을 인지하도록 명시)
토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2P 중개 서비스 • 보험서비스(단순 소개 또는 광고 주체임을 명시) • 토스머니 카드 서비스
핀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2P 중개 서비스 • 보험 추천 서비스 중단
NHN페이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 보험 등 금융상품 세부 정보 홈페이지 접속 시에만 확인 가능하도록 개편
보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컨설팅 플랫폼 개편(상품추천, 가입지원 등 일부 서비스 제외)

Source: 언론 보도자료 종합하여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③ 디지털 금융 정책 방향: 오픈 파이낸스 기초 유지하며 혁신 촉진

데이터 중심으로의 경제 구조 변화에 따른 디지털산업 경쟁력 향상 필요성과 금융산업 성장을 위한 디지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감독당국은 ‘혁신과 경쟁’을 뒷받침하면서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동시에 구현하는 균형 있는 대응을 통해 금융발전 유도를 추진

디지털 금융혁신 기본 방향



Source: 제23회 서울국제금융포럼 금융위원회 발표자료 참고하여 삼성KPMG경제연구원 재구성

③ 디지털 금융 정책 방향: 건전한 금융발전 관점의 빅테크 모니터링 예고

금융위원회는 빅테크의 잠재 리스크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 금융감독원 또한 빅테크의 빠른 사업 확장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을 적용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금융감독기관의 빅테크 모니터링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

금융위 2022년 금융정책 추진방향

1.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
2. 금융역동성 제고 및 금융발전 유도
3. 실물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견인
4. 포용금융 및 금융신뢰 확대

- 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나. 금융의 디지털전환 가속화
- 디지털 금융혁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발전전략 수립
 - 금융산업의 디지털·플랫폼화 진전을 위한 제도 개선·인프라 구축
 -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금융안정·소비자보호·공정경쟁 강화
- 1) 빅테크의 금융 진출, 시장점유율 확대에 대비하여 빅테크 잠재 리스크 점검 및 감독·관리방안 검토
- ①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영위형태별 리스크 기반 행위규제 강화
 - ② 빅테크그룹의 내·외부 리스크전이 차단을 위한 빅테크그룹 감독체계 도입 검토
 - ③ 금융회사 위험관리·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빅테크 제3차리스크 방지체계 구축
- 2) 금융분야의 디지털전환에 대비하여 소비자 보호체계 강화
- 다. 금융규제 선진화 및 자율성 확대

Sourc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2022.12.22)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 ①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 실태 점검
 - 금리인상·자산가격 조정 등에 대비한 점검 강화
 - 고위험자산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 ②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 강화
 - 한계차주 발생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 점검
 - 자영업자 금융지원 조치 종료 후 관리실태 점검
- ③ 디지털금융·빅테크의 내부통제 및 사이버리스크 예방
 - 빅테크의 시장영향력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 거래규모, 신규사업 진출 등 위험 요소를 분석하여 리스크가 높은 빅테크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현장검사 실시
 - 마이데이터 등 신기술 접목 영업에 따른 사이버 리스크 예방
 - 본격 시행되는 마이데이터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 및 중소형 금융회사의 해킹 방지, 홈페이지 관리대책 등 IT보안 실태점검
- ④ 금소법 준수 시스템 및 비대면 영업 체계 등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 금소법 시행에 따른 법규준수 시스템 마련
 - 비대면 영업 등 신규 판매 채널·상품에 대한 위험요인 점검

Source: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2022.3.2)

③ 디지털 금융 정책 방향: 금융사 디지털 전환과 비금융업 진출 장려

금융당국은 금융업 내 혁신과 금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슈퍼앱(Super App) 및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 보험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 등 규제 완화 정책을 병행하고 있음

금융사 DT(Digital Transformation) 전환 지원 정책

하나의 Super App 기반의 금융서비스 위한 제도여건 마련

- 은행·증권·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 제공하는 “Digital Universal Bank”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 확대

- 은행이 다양한 플랫폼 기반 사업을 영위하도록 부수업무 범위 확대 예정
- 제도개선 前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플랫폼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지원

금융·비금융간 정보공유 활성화 기반 마련

- 디지털화된 금융환경에서 핵심 자산인 데이터 활용 여지 제고

“은행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하도록 제도적 지원”

보험사의 非보험 서비스 장려 정책

보험업권 헬스케어 규제 개선

- 건강용품 커머스, 헬스케어 플랫폼 영위 허용
- 서비스 운영을 위한 선불전자지급 업무 허용

보험사 공공 건강의료 데이터 이용 승인

- 보험사 심평원 데이터 이용 승인 획득 ('21.7)
*(생보) 한화, 한화, KB / (손보) 삼성, KB, 메리츠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체 구성/운영

- 민관 합동으로 데이터 활용 촉진 모색 ('21.10)

“보험사의 헬스케어 등 비보험 서비스, 데이터 활용 촉진”

Source: 금융위원회 자료 참고하여 삼정KPMG Digital 본부 재구성

Source: 금융위원회 자료 참고하여 삼정KPMG Digital 본부 재구성

Contents

	Page
I. 코로나19 팬데믹, 빅테크의 독주	2
II. 글로벌 주요 빅테크의 금융업 관련 행보 및 규제 방향	6
III. 국내 빅테크 규제 방향과 주요 빅테크의 금융 비즈니스	19
IV. 결론 및 시사점	32

금융생태계의 빅블러를 고려한 전방위적 전략 재검토 및 규제 정비

1

빅테크, 광범위한 고객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생태계 및 미래 금융산업 구조 재편 가능

- 오프라인에서 모바일로의 채널 변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 등 기술의 발전과 함께 빅테크의 금융서비스가 구현되면서 금융산업의 밸류체인을 비롯하여 경쟁구도와 규제체계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이 재편

- 빅테크는 대규모 고객과 빅데이터, 디지털 역량,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진화
-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채널이 일상화로 빅테크의 잠재력 발현
- 이는 미래 금융산업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2

글로벌, 빅테크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각국 환경에 적합한 규제 마련

- 빅테크로 인한 긍정적 효과(금융서비스 다양화, 포용 금융, 금융편의성 증대,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 촉진)와 잠재적 위험성(시스템 리스크, 금융소비자 보호 저해, 데이터 독과점 등)에 대한 논의 확대
- 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필요성 제기

-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입법 강화
- EU 데이터 전략과 공정 경쟁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투 트랙(two-track) 방식 규제 강화 기조
- 중국 또한 규제 기조가 급선회하며 기술기업에 대한 당국의 관리 및 규제가 강화

3

국내, 빅테크 규제 정비 등을 통한 디지털 금융 환경 조성

- 빅테크 영향력 확대에 따라 금융업 관련 리스크 관리 및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형평성 확보를 위한 감독 강화, 새로운 규제 마련 방침

-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혁신과 경쟁 촉진 vs. 빅테크로 야기될 수 있는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하, 신용 리스크, 데이터 독점, 금융소비자보호 등 잠재 리스크에 대한 우려 대두
- 이에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되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과 혁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함께 도모하려는 움직임

Key Takeaways 1. 비즈니스 관점: 금융사 및 빅테크, 규제 변화 고려한 전방위적 전략 재검토



<p>금융안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자본비율, 레버리지비율 등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준수하며 신규 비즈니스 영위에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레버리지, 연계성, 복잡성 확대 가능성에 따라 시스템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등 관련 잠재 위험 요소를 면밀히 관리할 필요
<p>소비자보호· 금융포용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불완전 판매 및 금융상품 중개-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디지털 금융 민원 및 사고 발생시 선제적 대응 전략 등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중심 경영전략 및 내부 컴플라이언스, 건전한 거버넌스 구축,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소비자보호 책임 확보 • 신파일러 등 금융포용성 제고, 자영업·중소기업 자금 공급 등 영향력 확대에 따른 사회적인 역할 수행에도 노력
<p>혁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력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한 빅테크와의 관계 정립, 핀테크/비금융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미래가치 제고 • 축적된 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동차·부동산·헬스케어 등 새로운 영역 진출을 통한 비금융 플랫폼으로의 진화와 디지털 신사업 기회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변화에 유연한 사업구조 확보 및 전략 재정비하고 디지털 금융의 확장성·연결성 등을 고려한 해외진출 고민 • 소비자의 페인 포인트를 해소함과 동시에, 핀테크·메타버스·가상자산 등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투자 및 M&A 기회 선점

Key Takeaways 2. 규제 관점: 공정 경쟁과 효율성, 소비자보호와 금융안정성 등 균형 필요

디지털 혁신과 금융정책 목표간 균형 모색 필요

-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도모하면서 **정책 목표간 상충(trade-off) 가능성** 발생
 - ① 금융안정성/시장건전성, ② 효율성과 경쟁, ③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소비자보호 등 정책목표상 상충 가능성 존재
- 이에 따라 **디지털 금융 구조를 이해하고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정책을 고민**하여 금융 안정, 공정 경쟁, 소비자보호 등을 함께 추구해야 함
- 특히, 디지털 금융에 맞춘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 필요
 - 포지티브 방식, 룰(Rule) 중심, 사후적/정태적 규제 → **네거티브 방식, 원칙 중심, 사전적/동태적 규제**

Source: BIS, Fintech and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financial services: implications for market structure and public policy(July 2021), 삼성KPMG 경제연구원

혁신 촉진 유지하며 금융안정성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 필요

- 빅테크의 금융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등 금융 소비자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부정할 수 없으며, 이에 **고객을 위한 혁신 촉진 기조는 지속될 필요**
 - 기존 금융사 등에도 지속적인 혁신을 위하여 비금융사업 진출 등 규제완화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디지털 금융의 저변을 확대해야 함
- 아울러 금융당국은 **빅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면밀한 이해와 잠재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확보 등을 위해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과 공동 대응 필요**
 - 궁극적으로 과잉 규제 가능성 차단과 금융산업 발전, 금융소비자 효익 증대를 위한 적절한 정책 및 규제 검토가 중요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Business Contacts

Consulting Service

조재박
핀테크산업리더, Digital 본부장
T: 02-2112-7514
E: jaeparkjo@kr.kpmg.com

장지수
MCS1 본부장
T: 02-2112-7577
E: jjang@kr.kpmg.com

박용수
RCS 본부장
T: 02-2112-0421
E: youngsoopark@kr.kpmg.com

김원택
Digital Tech 본부장
T: 02-2112-0384
E: wontaegkim@kr.kpmg.com

Audit

금융산업

조원덕
금융산업리더, B&F1 본부장
T: 02-2112-0215
E: wcho@kr.kpmg.com

최재범
B&F2 본부장
T: 02-2112-0213
E: jaebeomchoi@kr.kpmg.com

권영민
B&F3 본부장
T: 02-2112-0217
E: ykwon@kr.kpmg.com

Tech산업

염승훈
Tech산업리더, ICE2 본부장
T: 02-2112-0533
E: syeom@kr.kpmg.com

박성배
ICE1 본부장
T: 02-2112-0304
E: sungbaepark@kr.kpmg.com

전철희
ICE3 본부장
T: 02-2112-0355
E: cjun@kr.kpmg.com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